



보도	2023.10.12.(목) 조간	배포	2023.10.11.(수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국 검사3팀	책임자	국 장	김진석	(02-3145-7010)
		담당자	팀 장	김기복	(02-3145-7040)

증권사 사모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(잠정)

주요내용

- ◆ 금융감독원은 사모CB의 매매·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년도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,
 - 사모CB 보유규모가 큰 증권사 A사에 대해 기획검사*를 실시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규행위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.
- * (검사기간) '23.8.16. ~ 9.22. (28영업일)
- ◆ 금번 A증권사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이 발견(잠정)되었습니다.
 -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IB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의 사모CB 발행 관련 주선·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
 -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CB를 직원·가족 등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.
 - 또한 담보채권 취득·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,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 등도 확인하였습니다.
- ◆ 금융감독원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며
 - A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.

I. 검사실시 배경

□ 최근 3년간('20~'22년) 사모 전환사채(이하 '사모CB') 발행금액은 총 23.2조원으로 점차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

- 사모CB 인수 후 시세조종,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 발생*하고 있습니다.

* '23.6말 기준, 금감원은 40건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을 발굴하여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(23.7.25.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)

□ 증권사 IB부서는 사모 CB의 발행, 유통 정보를 업무상 먼저 지득하고 발행조건 및 투자자 주선 등을 발행사와 논의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

- 인수, 주선, 직접투자 등을 통해 발행사에 사업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은 물론, CB 발행사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책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.



□ 금감원은 사모CB의 매매·증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년도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할 바 있으며

☞ 『사모CB를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습니다』(23.1.18. 보도자료 참조)

- 사모CB 보유 규모가 큰 증권사 A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*, 업무과정에서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위규 혐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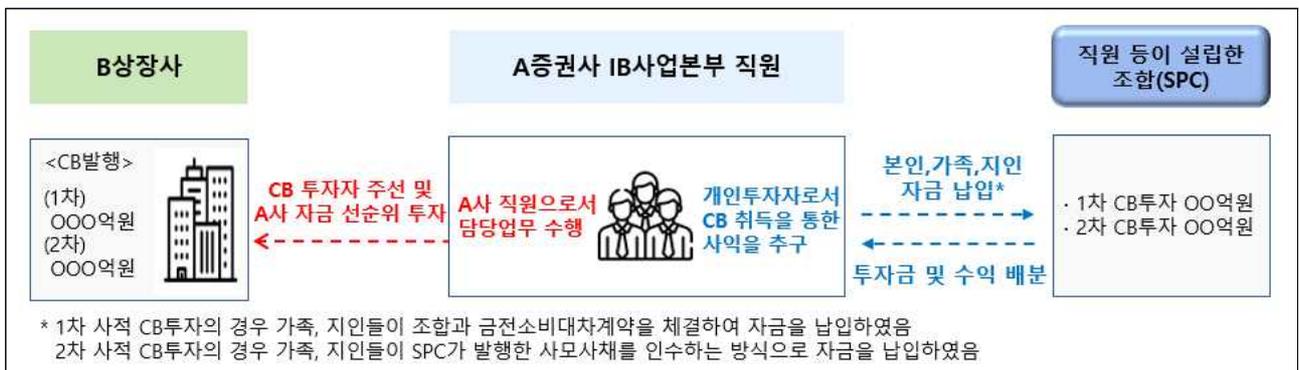
* (검사기간) '23.8.16. ~ 9.22. (28영업일)

II. 주요 검사내용(잠정)

① 임직원의 사익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적 CB 투자
② 확인된 특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담보채권 취득, 처분시 우월적 지위 활용 ■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의 제공

1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

-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 또는 제삼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 - A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A증권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*를 이용하여,
 - * 담보 가치평가·발행사 상황 등 A증권사 내부 투자검토 심의자료, 여타 투자자 섭외 경과 등
 - 직원 본인·가족·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2차례 투자하고 〇〇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가 있었습니다.
-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
 - 직원 본인·가족·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·지인 명의로 조합(1차, 〇〇억원) 및 SPC(2차, 〇〇억원)에 자금을 납입한 후
 - B상장사 CB를 조합 및 SPC를 통해 취득, 처분한 결과 〇〇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었습니다.



- 또한,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
 -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·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회사(A증권사)에 알리지 않았습니다.

2 검사결과 확인된 특이사항

가 담보대상 채권 취득·처분시 A사의 우월적 지위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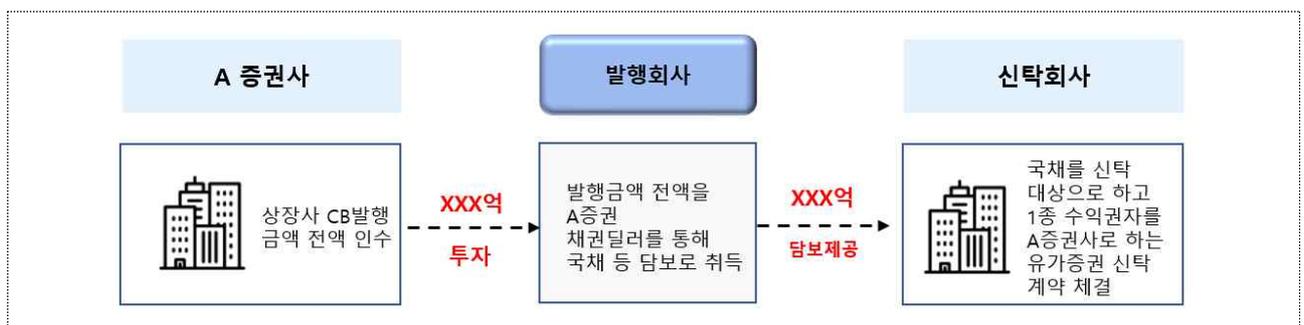
- A증권사는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.*

* 계약서 상에 국채가 아닌 A0 등급 이상의 채권을 담보로 설정할 경우나 자금사용을 위해 담보해제가 필요할 경우 발행사로 하여금 A증권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

- 담보채권의 취득은 A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, A사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하였습니다.
- A사는 발행사에게 국채 또는 AA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(안)을 2~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중에서 취득하도록 함으로써*,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 범위가 일정 제한되었습니다.

* 실제 담보로 설정된 채권은 모두 국공채 또는 AAA 등급 은행채들만 편입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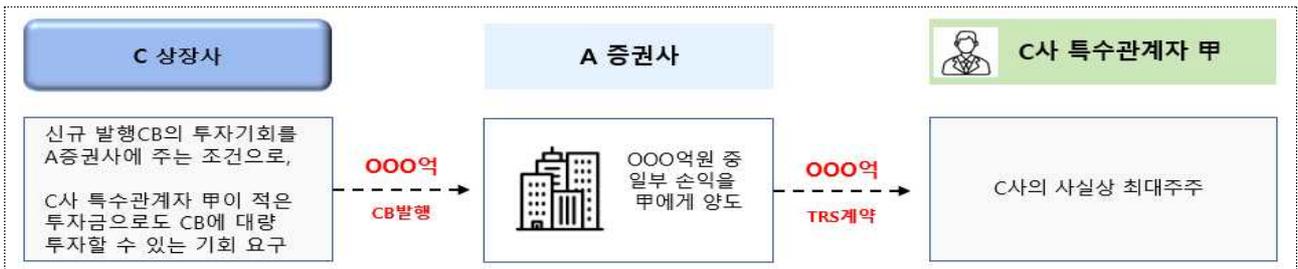
- A사가 담보채권을 해제하여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·운영자금 사용 등에 쓸 수 있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었으며,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담보채권 해제를 동의하였습니다.



나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 제공

- 상장사 C사는 특수관계자 甲이 최소자금으로 C사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A증권사에 요청하였으며
 - 이에 A증권사는 C사 발행CB를 취득한 후 이중 50%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(TRS) 계약을 甲과 맺었습니다.
- 해당 장외파생상품(TRS) 계약은 A증권사가 CB 관련하여 개인과 맺은 유일한 장외파생상품(TRS) 거래였습니다.
 - 동 장외파생상품(TRS)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으며,
 -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% 상당 금액만 수취되었는데, 이는 주식·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(CFD 등) 거래의 담보비율* 대비 현저히 낮았습니다.

* 통상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또는 CFD 거래의 경우 40~50% 수준 금액을 담보로 수취



III.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또한,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,
 - A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토록 하고,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